

**□ 적용대상**

-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(예정)·중퇴한 자 또는 재학·휴학 중인 자
- 2개 이상의 대학 졸업의 경우 지원자가 제출한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판단

**□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**

-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
  - 1)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「고등교육법」상 ‘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기술대학, 각종학교’
  - 2)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
    - \* (가점대상대학)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,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,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,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
  - 3)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·경기·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
  - 4)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
-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(예시)
  - 1)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대학
  - 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
  - 3) 사이버대학, 디지털 대학 등 「평생교육법」상의 평생교육시설
  - 4)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

## □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-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
-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- 대학원 및 사이버·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, 학점 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,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
## □ 비수도권 지방대학 졸업여부 검증

- 졸업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지방대학교 졸업자임을 검증하되,
- 분교인 경우 졸업증명서에 본교와 분교의 구분이 없는 관계로 분교 졸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(학교장 확인서 등)를 제출 받아 검증